#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739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 장철민·박지원·이춘석

이인영 · 김교흥 · 이재관

황정아 • 박정현 • 민형배

김태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 및 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교구를 사용 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 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만 13세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하여 적용할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만 13세 이하의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하여 적용할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u>-1·</u>